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. 2. 15 선고 2021가단2142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안 담당변호사 이상현

변 론 종 결 2022. 1. 18.

판 결 선 고 2022. 2. 1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, D과 피고 사이에 2021. 4. 9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D에게 2021. 4. 9. 접수 제0465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D이 2021. 4. 9.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(이하 ‘이 사건 자동차’라고 한다)를 매도하고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준 사실(이하 위 매매계약을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고 하고, 위 소유권이전등록을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’이라고 한다)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2.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D에 대하여 2019. 6. 3.자 자동차할부대출 원리금 잔액 26,831,582원과 2019. 7. 19.자 신용대출 원리금 잔액 10,866,68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, D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D의 채권자로서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나. 판단

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(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 판결).

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, 갑 제1 내지 5, 8,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원고 주장의 위 자동차할부대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채권가액 21,300,000원, 채권자 원고인 제1순위 저당권과 채권가액 10,000,000원, 채권자 주식회사 E인 제2순위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,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(약 21,000,000원)이 위 각 저당권의 채권가액의 합계액은 물론, 위 제1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,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

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.

사정이 이와 같다면 D이 사해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,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 문제 등으로 저당권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판사 추경준

별 지 목 록

1. 1. 자동차등록번호:
1. 자동차명: K7
1. 형식: A011-00060-0084-1318
1. 차대번호:
1. 원동기형식: D4HB
1. 사용본거지: 부산광역시 기장군 , 호
1. 소유자: (주)

